

●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1578호

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2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기준」

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내실화를 위해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계속교육을 일반 계속교육과 필수 계속교육으로 구분한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시행령 개정(2024.1.7. 시행)내용을 반영하고, 스마트 건설기술 인력양성을 위해 스마트 건설 교육을 확대 편성하도록 하고, 교육·훈련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의 위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계속교육 편성 개선(안 별표6의2)

건설사업관리 기술인 교육·훈련 내용 중에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의 계속교육은 일반교육 및 필수교육으로 구분 표기

나.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확대 편성(안 제23조, 별표 10)

건설기술인 전문교육 중 계속교육에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 5시간 이상을 편성하고, 모든 전문교육(최초, 계속, 승급교육)의 스마트 건설 기술 교육 시간에 BIM과목 3시간 이상을 포함

다. 교육·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 위탁근거 마련(안 제30조의5)

교육관리기관의 위탁업무 범위에 교육·훈련정보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포함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기술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,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
기술정책과 (우) 30103

- 전자우편 : jhlim89@korea.kr

- 팩스 : 044-201-5551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lit.go.kr>)에서 정책자료/법령정보/입법예고·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(전화 044-201-3556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